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사할린동포지원에관한특별법
시행령제정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경화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17305호, 2020. 5. 26. 공포, 2021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절차,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·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(안 제2조)

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 받고자 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.

나. 지원여부 결정(안 제3조)

외교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,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결정함.

다. 업무의 위탁(안 제4조)

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및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에 관련된 사항 등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 절차 진행 중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: 추후 시행 예정

2) 행정규제 : 추후 시행 예정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)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받고자 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외거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분관(分館) 또는 출장소의 장(이하 “재외공관장”이라 한다)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할린동포: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: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3조(지원 여부 결정) ① 제2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,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결정한다.

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,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업무의 위탁)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2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
2.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에 관련된 사항

제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외교부장관(제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무
2. 법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외교부 재외동포과	
연 락 처	(02) 2100 - 7575